

	<h2>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8-17
		제정일자	2007.05.01.
		개정일자	2024.09.01.
		개정차수	6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 제32조의2조에 의하여 안산대학교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이사장 및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다만,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.

1.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3.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5.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6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평의원회는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13인으로 구성한다.

1. 전임교원 : 4인
2. 정규직원 : 2인
3. 조교 : 1인
4. 총학생회장과 대의원의장 : 2인
5. 총동문회장 : 1인
6.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교인(목사, 장로 또는 권사) : 3인

제4조(자격) ① 교수평의원과 직원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2.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
3. 3개월 이상의 국외장기연수, 연구학기

②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
제5조(추천 및 위촉) ①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추천 및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 평의원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총 8명의 후보를 추천하고, 이 중 4인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
2. 직원 평의원은 전체직원회의를 통해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, 이 중 2인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
3. 조교 평의원은 전체조교회의를 통해 총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, 이 중 1인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
4. 학생 평의원은 학생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장과 대의원의장을 총장이 위촉
5. 동문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선출된 총동문회장을 총장이 위촉

6.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 교인(목사, 장로 또는 권사)은 3인을 총장이 위촉

② 평의회회의 각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의장 등) ① 평의회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회회를 대표하며, 이사장 및 총장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기간 내에 평의회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7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총장이 위촉한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 및 사임) ① 의원에 위촉된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에서 해촉된다.

1. 평의원이 제3조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
2. 평의원이 각 직능단체의 소환으로 직무정지가 가결된 경우
3. 평의원에 위촉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
4. 평의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제4조에서 정한 평의회 자격을 상실한 경우

② 평의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평의회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평의회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고하고 이를 각 의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소집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총장은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심의·자문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) 평의회회 의원은 평의회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개방이사추천위원회) ① 대학평의회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평의회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.

③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2조(회의록) 평의회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평의회회에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

제13조(서기) 평의회회는 의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14조(운영비) 평의회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교비에서 지급한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 시행령, 학교법인새빛학원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12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